

의안번호	제 628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 의 자	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5월 31일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8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발의자 : 이광희, 김학철, 연철흙,
박봉순, 박한범, 이연구,
최병운

1. 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규정 (안 제3, 4조)
-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 다.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도민 등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마.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조 규정 (안 제8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29호
- 라. 협의 :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
-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도 소재 법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4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 개요

-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 지원

3. 관계 법령 및 관련 조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보조금)
- 가칭)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8조(재정지원 등)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

나. 추계결과: '18년~'22년까지 총 150,000천원(연 30,000천원) 정도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유건상